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25가단78009 약정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조금규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10.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2. 4. 20.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22. 11.경부터 재차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위약별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약정된 위약벌은 20,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22. 12. 6.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매우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아 속옷(9,000원 가량)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이미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의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원고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달리 정함이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만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가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이에 서명하여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판매한 것은 유아용 집게핀, 반지, 팔찌 등 소액의 제품이고, 일부 제품은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액은 4,5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위약벌은



위 금액의 10배를 넘는 금액인 50,000,000원으로, 피고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 1회 저작권 침해행위만으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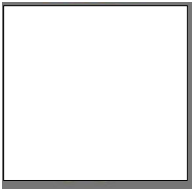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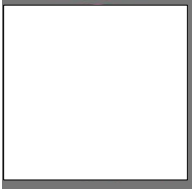
###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위약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5. 3. 2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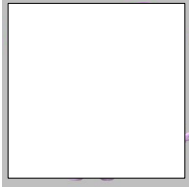
판사            황일준



## 별지

No.	본 건 저작물	
1	저작물의 구성	
	창작연월일	2021. 2. 2
	저작권 등록번호	C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의 종류)	D (미술저작물_응용미술_캐릭터)
2	저작물의 구성	
	창작연월일	2021. 2. 2
	저작권 등록번호	E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의 종류)	F (미술저작물_응용미술_캐릭터)



3	저작물의 구성	
	창작연월일	2018. 9. 12
	저작권 등록번호	G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의 종류)	H (미술저작물_응용미술_캐릭터)
4	저작물의 구성	
	창작연월일	2018. 9. 12
	저작권 등록번호	I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의 종류)	J (미술저작물_응용미술_캐릭터)

끝.